

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561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5. 4. .

提出者：大田廣域市長

1. 提案理由

市統合公課金制度가 '94.10.1日 廢止되고 上水道給水使用料와 納期를 같이하여 병기 고지징수하고 있어 '95年 6月까지는 전세목 및 使用料가 完全 電算處理되고 또한 下水道法및 大田廣域市上水道 給水條例 改正되었기 이원화로 不合理한 部分을 現實에 맞게 改正코자 함

2. 主要骨子

本條項인 大田廣域市 下水道使用條例中 “年利 9.6%의 延滯金을 當該 使用料 占用料 其他 負擔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”를 “加算金은 納期를 經過한 때로부터 滯納額의 100分の 5를 加算하여 徵收한다”로 改正함 (第21條)

3. 參考事項

下水道法 第38條, 大田廣域市 上水道給水條例 第33條

대전광역시 조례제 호

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가산금)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(다른조례의 개정)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5조중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을 “대전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신,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1조(연체금)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 용료, 점용료 기타 이조레에서 정하는 부담 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.6%의 연체금을 당해 <u>사용료,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</u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다만,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때에는 1개 월로 산정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에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 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</p>	<p>제21조(가산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</u> <u>채납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</u> <u>한다.</u></p> <p><u>(삭 제)</u></p> <p><u>(삭 제)</u></p>

□ 參考事項

1. 下水道法

第38條(強制徵收)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이나 條例로 인하여 그 業務로 된 使用料·占用料 其他의 負擔金의 納付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納付할 期限을 정하여 督促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경우에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. 이 경우 加算金은 滯納된 金額의 100分の 5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(改正 '93.12.10)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指定期限까지 納付하여야 할 金額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地方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.

2. 大田廣域市 上水道 給水條例

第33條(加算金) 水道使用者 등이 水道使用料金과 給水裝置 손료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할 때에는 納期를 經過한 때로부터 滯納額의 100分の 5에 相當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. 다만, 市長이 따로 정하는 機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